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대상 공제사업 실시 근거 규정〉
■ 김태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025호)

2024.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유인규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대상 공제사업 실시 근거 규정	2
※ 참고자료	9
1.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 개요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태년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13.
3. 회부연월일 : 2024. 9.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근거로 2018년부터 시행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재직 촉진 및 자산 형성에 효과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종료되고 현재는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내일채움공제 사업만 운영되고 있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위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장기재직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성과보상공제사업을 운영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으

로써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재직 및 자산형성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8 신설).

Ⅲ. 검토의견

1.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대상 공제사업 실시 근거 규정

개정안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 촉진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장기재직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그 공제사업의 가입대상 및 가입기간 등 운영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안 제35조의8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5조의8(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공제사업) ① 중소기업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35조의5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장기재직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은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가입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적립금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성과보상기금¹⁾을 설치²⁾하고,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성과보상기금을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등의 공제납입금 및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³⁾하고, 성과보상기금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등에 대한 공제사업, 교육사업, 복지사업을 위하여 사용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담당⁵⁾하고 있음.

1) 성과보상기금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2014년에 공제사업 구조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우수인력의 장기재직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 납입 후 장기 재직할 경우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임.

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①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3.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4.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보상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전수를 위한 교육사업
3.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사업
4.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4(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성과보상기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한다.

2024년 10월말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업, 근로자, 정부가 다양한 비율로 공제금을 적립하는 내용으로,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그리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등의 후속 사업에 해당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등의 성과보상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표 1] 성과보상공제사업 운용 현황

구 분		내일채움공제 (2014~)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2018~202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2023)
가입 대상	재직	중소·중견 기업 재직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
	연령	제한없음	만 15~34세 이하	만 15~34세 이하
	소득	-	-	연 3,600만원 이하
	업종	모든 업종 (주점업 등 일부 제외)	모든 업종 (주점업 등 일부 제외)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
가입기간		5년	5년	3년
납입금액		근로자(1) : 기업(2이상) (월 최소 34만원)	청년 720만원+ 기업 1,200만원+ 정부 1,080만원	청년·기업·정부 각 600만원
수령금액		2,000만원	3,000만원	1,800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개정안은 이 가운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방식의 공제사업을 반드시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018년에 처음 시작되어 5년간 한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가 2022년 말 사업기간이 도래하여 신규가입이 종료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공제사업의 적립기간 및 기업 분담비율, 만기금액 등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사업을 개편하여 2023년도부터 새로운 사업(‘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으로 시행 중임.

개정안과 같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경우, 공제사업의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개정안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가입대상, 가입기간, 정부 적립금 차등지원 등 구체적 운영방식에 대한 조항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음.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공제사업의 가입대상을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로 하고, 가입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정부적립금을 차등지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는 공제사업의 가입대상 및 가입기간을 2022년 신규가입이 종료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운영기준과 일치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라는 본래 사업 취지에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공제사업이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정부 적립금 등의 재원으로 한

성과보상기금을 통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재정 상태 및 경제 환경의 유동성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사업 설계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가입대상 및 가입기간 등 세부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은 유연한 공제사업 운영 및 정부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공제사업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⁶⁾⁷⁾, 소기업·소상공인공제⁸⁾⁹⁾)은 공제사업의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8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자의 도산을 막고 공동판매와 구매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한다.

제109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조성) ②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중앙회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수 없다.

제114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관한 세부 규정)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7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자) 법 제109조제2항 단서에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이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고 있는 자

3.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기금운용요강(이하 “기금운용요강”이라 한다)에서 정한 업종 및 사유에 해당하는 자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용) ①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이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라 한다)을 관리·운용한다.

②소기업과 소상공인공제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가입) ①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이미 공제에 가입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②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5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 자) 법 제116조제1항 단서에서 “이미 공제에 가입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일 현재 이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자

3. 중앙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가입대상 및 가입기간 등을 법률에서 개략적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의 경우 하위법령 및 내부규정(공제운용요강) 등에 위임하고 있는 반면, 「과학기술인공제회법」(과학기술인공제)은 공제사업의 가입대상 등을 법률에서 규정¹⁰⁾하고 있음.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12개월분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

4. 그 밖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원활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의 임직원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임원·연구원 및 그 소속 직원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임직원
5.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개설된 기술사사무소의 기술사 및 그 소속 직원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의 회원 및 임직원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임직원
7.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임직원
8.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의 기관·사업자 및 법인 등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10.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다가 퇴직 등의 사유로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④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회원이 된다.

제6조의2(회원자격심사위원회) ① 공제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 판정기준 정립에 관한 사항
2.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제6조제2항제8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제6조제2항제8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다가 퇴직 등의 사유로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판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원자격과 관련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한편, 동 개정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 법률이 청년근로자를 위한 성과보상기금의 설치근거¹¹⁾ 및 정부 출연의 근거¹²⁾를 이미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과 같이 별도의 조항을 신설할 필요성이 높지 않고, 개정안과 같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공제사업을 의무화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및 청년고용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 개정예 부동의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기획재정부는 경영 및 근로 여건, 청년 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며, 법률에서 제도를 의무화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경영상 및 근로상 제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 6788-5463

제17조(자본금)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회원 또는 사용자의 부담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출연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제1항제2호의 보조금·출연금을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지급할 수 있다.

1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①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3.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4.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보상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참고자료 1】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 개요

☐ 공제상품 개요

구 분		내일채움공제 (2014~)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2018~202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2023)
가입 대상	재직	중소·중견 기업 재직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
	연령	제한없음	만 15~34세 이하	만 15~34세 이하
	소득	-	-	연 3,600만원 이하
	업종	모든 업종 (주점업 등 일부 제외)	모든 업종 (주점업 등 일부 제외)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
가입기간		5년	5년	3년
납입금액		근로자(1) : 기업(2이상) (월 최소 34만원)	청년 720만원+ 기업 1,200만원+ 정부 1,080만원	청년·기업·정부 각 600만원
수령금액		2,000만원	3,000만원	1,800만원

☐ 가입실적

(단위 : 명)

구 분	'14	'15	'16	'17	'18	'19
내일채움공제	2,100	8,023	7,071	9,619	11,841	8,856
청년재직자	-	-	-	-	36,031	37,358
청년재직자 플러스	-	-	-	-	-	-
구 분	'20	'21	'22	'23	'24.8	계
내일채움공제	10,929	11,598	12,152	12,422	10,736	105,347
청년재직자	32,087	30,422	20,971	-	-	156,869
청년재직자 플러스	-	-	-	5,465	-	5,465